

# 연금 시장 리뷰

개인형 퇴직연금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 특집호 (1)

## 퇴직연금

- 특집이슈: 개인형 퇴직연금(IRP) 성장 전망과 영향
- 동향: 연기연금 확대 시행 두 달 만에 신청자 2배이상 증가
- 퇴직연금통계



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.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이슈 : 개인형 퇴직연금(IRP) 성장 전망과 영향

1. 국내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

가.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의 비교

□ 2012년 6월에 종료된 개인퇴직계좌제도(IRA;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)는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와 기업형(또는 특례형) 개인퇴직계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.

-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중간정산, 이직 및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서 은퇴시점(55세 이후)까지 적립·운용하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.
- 가장 큰 장점은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80% 이상을 가입하면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납입을 미룰 수 있음.
- 즉,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입해야 하지만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과세가 연기되므로 과세 금액만큼 더 투자할 수 있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임.
- 또한, 개인퇴직계좌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(15.4%)가 아닌 좀더 낮은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(5.5%)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음.

<그림 > 개인퇴직계좌 단계별 세제혜택

IRA 가입	운용단계	연금/일시금 수령
퇴직소득세 과세 이연	이자소득세 과세 이연	연금소득세/ 퇴직소득세 부과

- 반면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를 말함.
-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인퇴직계좌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급여(DB)형이나 확정기여(DC)형을 설정할 수 있음.

- 개인퇴직계좌를 포함한 퇴직연금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'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'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개인퇴직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(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으로 변경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임.
-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퇴직계좌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거의 유사하나 한 단계 개선된 제도임.
  -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이나 펀드 상품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.
  - 퇴직시 근로자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으로 자동 이전됨.
  - 종전까지 본인의 추가 납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능하였으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시행후 연간 1,200만원 한도까지 기존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짐.
  - 현재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입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음.
  - 기존의 개인퇴직계좌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용범위가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소상공인, 공무원, 군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함.
  - 적용범위의 대폭 확대는 법률 시행후 5년 즉, 2017년 7년 이후부터 가능
  - 개인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존의 개인형 또는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적용대상자 이외에 적용대상자가 기존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자영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 되었고,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.
  - 연간 1,200만원 한도 하에서 추가 납입 가능
  - 또한, 기존의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퇴직계좌의 개설이 가능하였으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러한 본인 동의를 생략되어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(연)금이 자동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 하게 됨.

<표 >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의 비교

구분	개인퇴직계좌	개인형 퇴직연금
설정 자격 및 조건	√직장을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(개인형) -퇴직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% 이상을 적립 √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(기업형)	√개인형 IRA 적용 대상자 √기업형 IRA 적용 대상자 √기존 퇴직연금 제도 가입 근로자 √자영업자 등(소상공인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)는 2017년 7월부터 가입 가능
추가 납입	불가	√추가 납입 가능(연간 1200만원 한도) √퇴직시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하던 펀드 등 현물자산을 그대로 이전 가능
퇴직급여 이전 방식	√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퇴직일시금을 IRA로 이전	√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강제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

#### 나.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

□ 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도입 목적, 가입단계, 운용단계, 지급단계, 세제 등에서 차이가 있음.

- 첫째, 도입 목적이 개인형 퇴직금은 근로자의 표준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장하는 제도이며, 개인연금은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함.
- 둘째, 가입단계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(2017년부터 자영업자 등 시행)으로 하지만 개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, 계산기초율에서 차이가 남.
- 셋째, 운용단계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근로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, 개인연금은 적립금에 대한 투자 방법을 가입자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의해 관리됨.
- 넷째, 지급단계에서 개인연금은 세금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입기간 10년을 유지해야 하나 개인형 퇴직금은 별도의 가입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(단, 특례형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 요건).
- 다섯째, 세제혜택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동일하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,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차이가 있음.

- 즉,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시 기타 소득세 22%가 부가되고, 5년 이내 해지시 불입한 누계액의 2.2%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,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됨.

<표 2>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

구 분		개인형 퇴직연금	개인연금 <sup>1)</sup>
목적		-표준적인 노후생활 영위	-개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 영위
근거법		-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	-조세특례제한법
취급금융기관		-보험회사, 은행, 증권사, 자산운용사, 신탁회사, 농·수협, 근로복지공단	-보험회사, 은행, 증권사, 투신운용사, 신탁회사, 농·수협, 우체국, 신탁
가입 단계	가입대상	-근로자(2017년부터 자영업자 등)	-18세 이상 전 국민
	부담주체 및 한도	-근로자(퇴직급여의 80% 이상) -기업(특례형 연임금총액의 1/12이상)	-개인(400만원 한도)
	계산 기초율	-임금상승률, 이자율, 사망률, 탈퇴율 등이 수시로 변동하는 개방형 구조	-사망률, 이자율 등이 고정되어 보험료가 산출된 폐쇄형 구조
운용 단계	운용주체/운용책임	-근로자[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]	-금융회사[운용손익이 금융회사(원리금보장형) 또는 개인(실적배당형)에 귀속]
	담보대출	-극히 제한적 가능(중도인출도 동일)	-가능(중도인출도 동일)
	원금보장 여부	-근로자가 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 가능	-개인의 금융회사 선택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으로 가입 가능
지급 단계	수령기간	-55세 이상(특례형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)	-10년 이상 납입, 55세 이상 수령
	지급방식	-종신연금, 확정연금, 일시금(퇴직소득세 부과)	-좌동(단,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 22% 부과)
세제혜택		-법인세 손비인정, 추가 기여시 소득공제혜택(기업형), 연금소득세 부과	-소득공제혜택과 연금소득세 부과
수급권 보호		-타인에게 양도, 담보제공, 압류 불가능(단, 지급단계 시 50% 한도 압류 가능)	-예금자 보호제도
예금자보호		-원리금보장형으로 운영될 경우 적용	-좌동

주: 1) 2001년에 도입된 신 개인연금인 세금우대 연금저축을 기준

다.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이유

-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수는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취업근로자 대비 41.7%를 차지하여 OECD국가 평균의 두 배 이상의 수준에 이릅니다.
- 최근 자영업종의 경쟁이 치열하여 창업과 폐업, 재창업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소진되면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연금과 함께 추가적인 연금 수령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.
- 또한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며, 이직 후 재입사한 사업장이 퇴직금, 확정급여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(통산)이 불가능하여 퇴직 시 소액일시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진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.
  - 이에 가입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도 통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,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하여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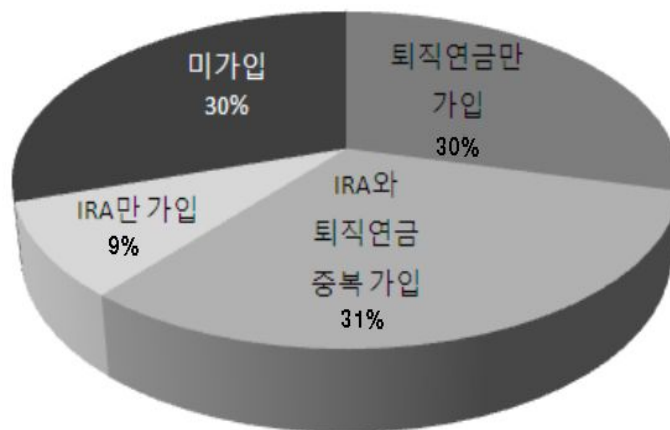
2. 개인형 퇴직연금 선진국 사례

가. 미국의 시장 현황

- 미국은 직장 이동 시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도입하였으며, 지금까지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음.
- 1974년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(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)에 의해 처음 도입된 IRA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음.
  - 첫째,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  - 둘째,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연금에서 누렸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
- 1974년 전통형 IRA의 도입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IRA를 제공하는 SEP(Simplified Employee Pension)이, 1996년에 SIMPLE IRA가, 1997년에는 Roth IRA 제도 등 다양한 IRA 제도가 도입됨.

- SEP(Simplified Employee Pension)는 기업이 보험료를 각출하는 방식으로 각출 수준이 매년 조정 가능한 IRA제도임.
  - SIMPLE(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) IRA는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의 노·사 쌍방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각출할 수 있는 방식임.
  - Roth IRA는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통형 IRA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활용하며,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나, 운용 시 및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(단, 5년 경과 시 비과세)함.
- 미국 자산운용협회(ICI)에 의하면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IRA 적립금 규모는 약 4조 9천억 달러로 전체 은퇴 자산시장의 약 25%를 차지함.
- 미국 전체 가구의 약 70% 정도가 퇴직연금(확정급여형형/DC형, IRA)에 가입하고 있음.
  - 또한, 전체 가구의 40%가 1개 이상의 IRA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는 IRA가 은퇴 자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일반화 되어 있음.

<그림 2> 미국 가계의 IRA 가입 현황



주: ICI(2011)

- 이처럼 미국에서 IRA 가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IRA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을 적립하는 통산장치, 즉,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'은퇴저축계좌'라는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임.
- 또한 다양한 IRA 제도가 존재하고, 세제 등 제도적으로 IRA 가입 혜택이 있으며, 가입요건에 대한 제약이 적고 퇴직연금과 IRA 제도에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임.

- 현재 미국에서는 IRA를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2011년 5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10가구 중 4가구는 IRA에 가입하고 있고 총 가입가구 수는 4,6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음.
- 종류별 IRA 가입가구의 비중은 기타 IRA(46.1%), 전통형 IRA(31.2%), Roth IRA(15.7%), SAR-SEP IRA 및 SIMPLE IRA(7.5%) 순으로 전통형 IRA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.

<표3> IRA 종류별 소유 인구 수 및 가구 비중

(단위: 백만 가구, %)

종류	소유 가구 수	비중
전통형 IRA	37	31.2
SEP IRA	8.9	7.5
SAR-SEP IRA		
SIMPLE IRA		
Roth IRA	18.6	15.7
총 IRA	46.1 <sup>1)</sup>	38.8

주: 1) 일부 가구는 한 가지 이상의 IRA를 소유하고 있음.

자료: ICI(2011)

#### 나. 일본의 시장 현황

□ 일본은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은퇴준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의 IRA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4월부터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제도(이하 '일본 IRA'이라 함)를 도입하였음.

-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기금관리 운영주체가 되어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특징임.
- 일본은 가입자격의 제한 등으로 미국처럼 적립금 이전 장치기능이 활발하지 못해 현재 미국의 IRA 제도를 기초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음.
  - 일본의 IRA제도는 2002년 4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IRA 가입자 수는 2011년말 기준으로 약 14만 명 수준에 불과함.
  - 이중에서 IRA의 가입자의 구성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각각 61.6%, 38.4%를 차지함.



다. 영국의 시장 현황

□ 영국은 IRA 제도와 유사한 스테이크홀더연금이 2001년 4월부터 도입되었고 2005년 새로운 연금개혁안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연금계좌제도(PA: Personal Accounts)가 시행하고 있음.

- 영국 정부가 개인연금계좌제도를 포함한 연금개혁을 추진한 배경에는 영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200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3.5%에 불과함.
  - 더욱이 최근 영국에서는 재정부담 확대에 따른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연금지급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인출 한도 25%를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안정된 노후소득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.
- 이에 영국 정부는 대기업에 견줘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제형 연금제도인 PA를 도입함.
  - PA는 월 급여의 8%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(4%), 직장(3%), 국가(1%)가 분담하여 연금에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, 개인연금이 뒤섞인 혼합 개인연금의 성격이 강함.
  - 민간연금이지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.
- 영국 정부는 올해부터 일단 5인 이상 소기업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,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함.
  - PA는 공적연금 수령 연령이 되지 않은 22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 수입이 5천~33,500파운드(약 900만~6,000만원)인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, 가입 후 탈퇴는 가능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자동으로 강제 가입됨

라. 독일의 시장 현황

□ 독일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리스터연금(Riester Pension)을 「2001 연금개혁법」의 시행에 따라 2002년에 도입함.

- 리스터연금의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, 예술가, 자영업자, 농·어업인, 요양 및 간병 환자, 군인, 사업장이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,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으로 다양한 직업 및 계층이 포함됨.

- 리스터연금의 정부 세제지원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제 공함.
- 리스터연금의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 보조금과 해당 자녀를 위 한 자녀 보조금으로 구성됨.
  -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해당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으로 구 성되며,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 전체 납입 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되어 납입하게 됨.
  - 보조금은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154유로와 185유로에 이르렀으며, 연간 최 소보험료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됨.
  - 또한,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200유로의 보조금과 신규 출 생자녀에게 300유로의 보조금을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음.
  - 연간소득 5천유로 이하,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지원금 비율이 92%로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,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보 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므로 저소득·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형태임.
- 또한, 리스터연금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, 동 혜택은 2,100유로(2008년 이후)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로 이루어짐(<표 4> 참조).

<표 4>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액 변화

구분	2002. 3	2004. 5	2006. 7	2008 이후
기본보조금 한도액(1인당)	38유로	76유로	114유로	154유로
자녀보조금 한도액(자녀 1인당)	46유로	92유로	138유로	185유로*
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기여율 (연간소득 기준)	1%	2%	3%	4%
정부보조를 위한 최대기여금액	525유로	1,050유로	1,575유로	2,100유로
소득공제액	525유로	1,050유로	1,575유로	2,100유로

주: \*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300유로의 보조금 지원

자료: BMAS(사회보험청)

- 리스터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 제도의 복잡성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2002년 가입대상자 4,200만 명 중 가입자가 33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, 지속적인 보조금 상향조정 및 신규 출생 자녀 등을 위한 보조금 신설에 힘입어 2009년에는 1,240만 명 이상이 가입하는 등 약 3.7배 성장함.

<표 5> 리스터연금 금융회사별 보유계약 건수 추이

(단위: 천 건)

구분	2002	2003	2004	2005	2006	2009
건수	3,371	3,924	4,190	5,631	8,050	12,400

자료: BMAS(사회보험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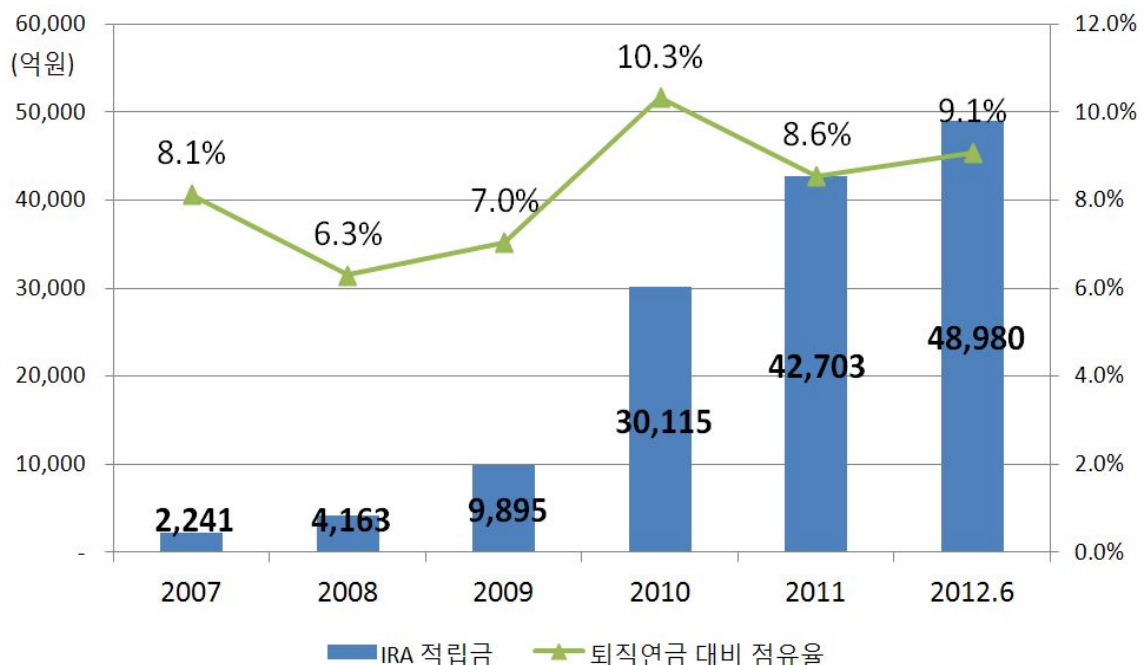
### 3.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전망

#### 가. 개인퇴직계좌 시장 현황

□ 우리나라의 개인퇴직계좌 시장은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123,150명이 가입하고 있으며, 이 중에서 43,983명이 개인형에 가입, 79,967명이 기업형에 가입함.

○ 가입자의 누적 적립금 금액은 약 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의 9.1% 정도를 차지하는 등 지난 5년간의 개인퇴직계좌의 성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<그림 3> 개인퇴직계좌 시장규모 추이



○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비중은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비중이 각각 1.1%, 8.0%를 차지하고 있음.

<표6> 금융권별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비중 현황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	전체 합계	개인형 IRA	기업형 IRA
적립금 (비율)		49,005 (100%)	42,929 (87.6%)	6,076 (12.4%)
업권별	증권	5,547	5,526	21
	은행	35,937	30,013	5,924
	생보	5,895	5,774	121
	손보	1,626	1,616	10

자료: 고용노동부(2012. 6).

□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는 퇴직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 즉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의 87.9%(4,741억 원),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84.1%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음.
- 반면,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의 11.5%,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6.3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대부분(17.8%)이 채권형 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.

<표7>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 현황

(단위: 억 원,%)

구분	개인형 IRA		기업형 IRA	
	금액	비중	금액	비중
원리금보장	20,793	84.1	4,741	87.9
실적배당	1,557	6.3	621	11.5
기타	2,371	9.6	33	0.6
총계	24,720	100.0	5,395	100.0

주: 1) 기타는 고유계정,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(운용대기자금 포함)임.

2) 비중은 연금형태별 '총계' 대비 비중임.

자료: 고용노동부(2012. 6).

나. 개인형 퇴직연금 성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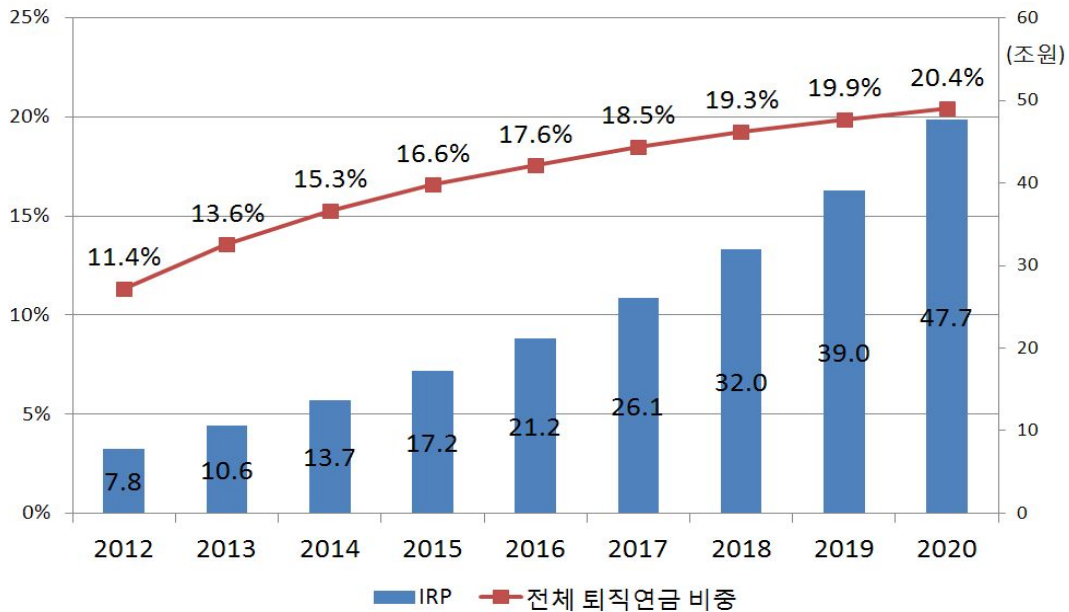
□ 개인형 퇴직연금은 금년 7월부터 퇴직시 급여 개인형 퇴직연금 자동이전,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가입, 적용대상자 확대 등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보임.

- 금년 7월부터 개정 근로법이 본격 시행되면 강화된 기능과 확장된 적용범위를 바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.
- 특히,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 이전 자동화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률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  -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균근속년수가 채 6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급여형·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부분이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,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대상을 퇴직자뿐 아니라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.
  - 특히 확정급여형 가입자들에게도 추가납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.
- 아울러, 2017년부터 기존 퇴직급여제도에서 배제되어왔던 자영업자를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연금시장의 적용범위가 현재보다 큰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.
  - 통계청에 의하면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순수한 자영업자의 수는 2012년 6월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8.8%를 차지하며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수도 약 60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.
  - 2012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용근로자 수는 약 952만명인데, 여기에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면 퇴직연금 적용범위가 1,596만명으로 67.6% 증가하게 됨.

□ 이러한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11년 약 4.3조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자동이전 및 추가가입의 영향으로 2012년 7.8조원으로 성장하여 2015년 17.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- 아울러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가입자의 대폭 확대가 시행되는 2017년에는 26.1조원으로 성장하고 2020년 경에는 47.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-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2011년 약 49.9조원에서 2012년 약 68.7조원으로 성장하여 2015년 약 103.7조원, 2020년 약 233.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<그림 4>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전망



자료: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

#### 4.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시의 제반 영향

□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① 시장의 무게중심이 확정기여형으로 이동, ② 안정적인 노후소득 자원 확보, ③ 재정부담 리스크 감소 효과를 기대, ④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발전, ⑤ 장기적인 자본 축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 등 총 5가지로 정리 될 수 있음.

① 첫째, 퇴직연금 시장의 무게중심이 확정기여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.

-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원금과 누적된 운영수익을 향후 수급한다는 운영방식에서 있어서는 확정기여형과 동일하여 외국에서는 확정기여형으로 분류하기도 함.
- 향후 퇴직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이 일반화되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범위가 자영업자 까지 확대되면 개인형 퇴직연금을 포함한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을 추월할 가능성이 큼.

- ② 둘째, 직장 이동시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되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재원을 확보가 가능해짐.
-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개인퇴직계좌를 이동성이 높은 제도로 한 단계 개선 되어 모든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였음.
  -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 급여를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전하게 함으로써 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없이 노후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- ③ 셋째,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 리스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-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되, 사적연금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음.
  -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계층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함.
  - 이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.
- ④ 넷째,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.
-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닌 은퇴준비제도로써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출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  -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간의 통산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급옵션 설정과 지급보증 설계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.
- ⑤ 다섯째, 장기적인 자본 축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적인 자본이 축적되고 이 자본은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  -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축적되는 안정적인 자금의 규모는 예상외로 크고, 퇴직자산의 축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( 02-3775-9013, keon@kiri.or.kr )

□ 동향: 연기연금 확대 시행 두 달 만에 신청자 2배이상 증가  
(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요약)

- 지난 7월 연기연금제도 확대 시행 이후 2달 만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

<연기연금 신청현황>

(‘07.7.23~12.8.31. 기준, 단위: 건)

계	‘07.7~12	‘08~‘09	‘10.1~12	‘11.1~12	‘12.1~6	‘12. 7월	‘12. 8월
<b>6,628</b>	37	164	860	2,073	2,068	<b>682</b>	<b>744</b>
(월평균)	6	7	72	173	345	<b>682</b>	<b>744</b>

- 주) 1. 연기연금 제도 시행일(2007.7.23.), 연기연금종료건 포함  
2. 연기연금 신청요건 완화 및 가산율 상향(2012. 7. 1)

-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

- 60~64세(‘12년 기준)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\*을 받게 되므로,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됨

\* 연령별 급여 제한율

- 60세 50%, 61세 40%, 62세 30%, 63세 20%, 64세 10% 감액

- 2012년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변경됨

-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,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연금 수급자는 연기하여 그만큼 더 지급 받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기존에는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연기연금 신청자격 요건이 2012년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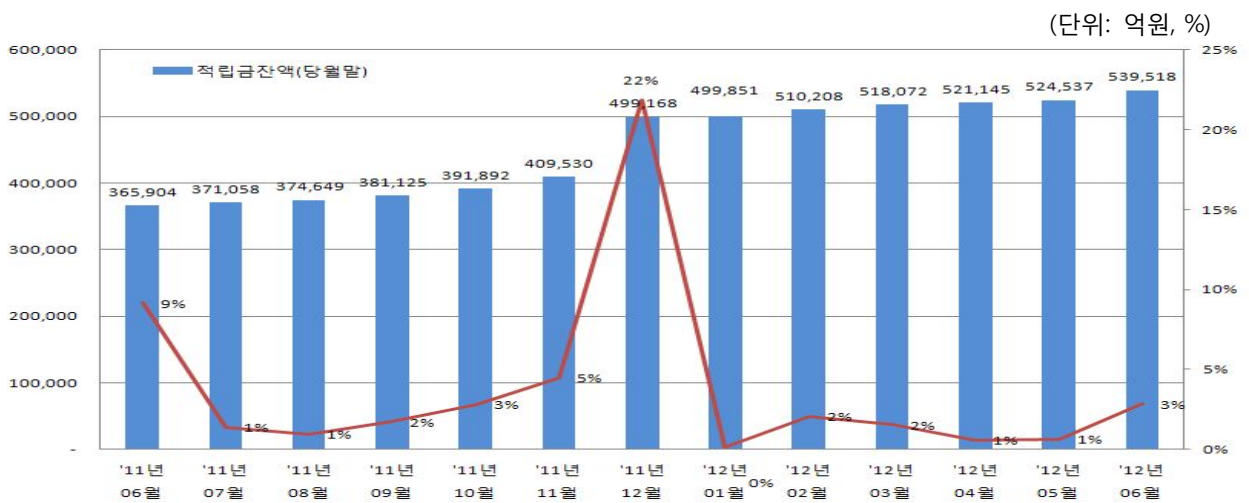
- 또한 고령 수급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%씩 급여액을 증액하였던 가산율도 연 7.2%로 상향
  
-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“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,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밝힘

□ 퇴직연금통계 (2012년 6월말)

○ 적립금 규모

- 2012년 6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3 조 9,518 억원으로 전년동기 (36 조 5,904 억원) 보다 17 조 3,614 억원(47.4%) 증가
- 제도유형별로는 퇴직급여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주로 DB제도를 선호함에 따라, DB 비중(73.4%)이 가장 높음
- 퇴직금 추계액(142.5 조 추정)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4.6%

<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>



자료: 금융감독원

○ 도입사업장

-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7,460 개소로 전년 동기(112,861 개소) 대비 48.3% 증가
- 쉐 사업장(1,519,850개소)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1.0%

<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>

구분	10인 미만	10인~ 29인	30인~ 99인	100인~ 299인	300인~ 499인	500인 이상	합계
(A)도입 사업장수	99,724	43,461	17,800	4,695	773	1,007	167,460
(B)전체 사업장수	1,273,047	178,396	54,720	10,969	1,425	1,293	1,519,850
도입비율 (A/B, %)	7.8	24.4	32.5	42.8	54.2	77.9	11.0

자료: 금융감독원

# HRI Leaders Forum

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

HRI 리더스포럼은  
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 
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.

## [HRI리더스포럼 혜택]

- 경제·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
- CreativeTV(usociety.co.kr)VIP멤버십 제공
- 경제·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(年 12권)
-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
-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
-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

## [연회비]

- 1명 : 연100만원 ■ 3명 : 연200만원 ■ 5명 : 연300만원

일정

매월 넷째주 목요일  
저녁 7시

장소

플라자호텔 22층  
다이아몬드홀

시간

19:00~21:00(2h)

###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

김난도 서울대 교수(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),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(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), 유홍준 명지대 교수(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), 금난새 지휘자(하모니리더십), 김정운 명지대 교수(마음을 움직이는 힘)



HRI리더스포럼 사무국

· Tel. 02-2072-6246, 6247 · Fax. 02-2072-6249 · E-mail. forum@hri.co.kr

 **현대경제연구원**  
http://www.hri.co.kr